

◆ 政府施策 ◆

輸入先多邊化제도 2천년 해제 – 99년까지 年40~50개씩 해제 –

지난 78년 처음 도입돼 그동안 對日 무역역조 개선과 국내 산업보호에 큰 기여를 해온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오는 2천년에 완전 폐지된다.

또 7월 1일부터 전기톱·골프채·준설선 등 10개 품목이 수입선다변화 적용대상에서 완전해제되고 자동차부품 등 5개 품목은 부분적으로 풀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자유로워진다.

통상산업부는 대내외 무역환경변화와 국내업체의 경쟁력 실태 등 제반여건을 종합검토, 수입선다변화제도를 99년 말까지만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40~50개씩 추가 해제해 나가되 매년 1월에는 대상품목의 경쟁력 실태를 감안해 25개 품목을 해제하고 7월에는 그 당시 무역수지 상황 등을 감안, 해제품목수를 신축적으로 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자본재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촉진시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수입선다변화 해제대상 품목에 우선 순위를 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보완시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통산부는 7월 1일부터 현재 162개에 이르고 있는 수입선다변화 품목 가운데 對日 수입증가가 적고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 10개를 적용대상에서 완전해제,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규제가 풀리는 품목수는 당초 전망했던 20여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작년 7월의 17개 보다도 적은 것으로 이는 통산부가 수입선다변화품목 추가해제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폭 증가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7월 1일부터 수입선다변화 적용대상에서 해제되는 품목중 전기관련 품목은 다음과 같다.

▲완전해제 · ()는 HS번호

△전기톱(8508200000) △절연도료, 피복권선용전선(8544111000)

ISO 9000 시리즈認證 국제화

– 통산부, 認證기관 · 심사원요건 강화 –

ISO 인증제도의 인증·연수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대폭 강화된다.

통상산업부는 품질보증체제인증(ISO 9000)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제상호 인정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이같은 방향으로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전면 개정·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품질시스템 상호인정기구(QSAR)가 발족되면 국내 인증으로 외국에서 별도의 ISO인증을 받지 않고도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운영요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인증기관은 기업에 대해 인증심사만을 하고 자문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행할 인증범위별로 상근심사원 1명과 전속계약을 한 심사원 1명 확보를 의무화했다.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심사도 당해 업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심사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적합한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만 인증을하도록 강화했다.

또 ISO에서 제정한 국제규격에 부적합한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징계금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해 인증에 대한 신뢰성 및 책임감을 제고했다.

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도 강화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지정된 연수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서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후 30일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어야 심사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ISO인증의 운영요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크게 강화한 것은 ISO 인증제도가 현재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국가규격으로 채택·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로 92년 KS규격으로 채택, 매년 100% 이상의 신장세를 거듭해 현재 약 1100여건의 인증이 이뤄질 정도로 ISO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SO가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지침을 작성중이고 국가간 상호인정을 추진하게 될 품질시스템 상호인정기구를 금년내로 정식 발족시킬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ISO 인증제도를 국제기간에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국내 인증획득의 확산에 주력한 나머지 인증제도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심사능력이 부족한 인증기관 및 심사원이 활동하게 돼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상실한 점도 운영요령을 크게 강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中企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 7월~8월10일, 전기 · 전자 등 9개업종 대상 –

7월 1일부터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할 중소제조업체 선정을 위해 9개업종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신청 · 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청과 기협중앙회는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91년부터 매년 3만5천명 수준의 병역자원을 중소기업에 배정하고 있는데 금년도 제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산업기능요원 지원이 필요한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대상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로 철강 · 기계 · 전기 · 전자 · 화학 · 섬유 · 시멘트 및 요업 · 생활용품등 9개 제조업 분야로 통산산업부 고시(제1995-90호, 95. 9. 14)에 포함된 기업과 대기업은 제외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8월말까지 중소기업청의 심사 및 추천을 거쳐 병무청 병무심의위원회에 통보, 오는 11월중 지정업체를 최종 선정된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채용 · 활용할 수 있다. 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제도 이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경기 · 부산등 11개 시 · 도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신청편의를 위해 기업중앙회 인력지원팀과 시 · 도별 12개 지회, 지역별 54개 협동조합, 12개 국가공단(국가공단협회)등 총 79곳에 접수처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 중부 · 서부 · 동남 · 서남공단등 국가관리공단 입주업체의 경우 각 국가관리공단 지원과 기획과에 접수하면 된다.

▲추천원칙 및 기준

공장등록을 마친 법인기업으로 업종별 신청기업수에 비례해 추천하되 추천기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추천한다. 단순노무인력 수요업체등은 제외되며 기술 및 기능인력 지원의 필요여부는 병무청장이 결정.

구체적으로 △ISO 9000 인증업체 · 공장품질관리등급업체 · KS표시 허가업체 · 생산성 우수기업 · Q마크 획득업체등 품질경영 우수기업 △100PM 품질혁신기업 △유망중소기업 △기술지도 우수기업 △유망선진기술기업 △지방소재기업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업체가 해당된다.

또 기계류 · 부품 · 소재 국산화업체 · 자본재표준화 및 공용화 수행업체등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수행업체와 △매출액대비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업체 △일류화추진기업, CAD/CAM 추천모델 업체, 특히 · 실용신안권 보유업체 △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투자기업 △농공단지 및 공단입주기업도 추천대상이다.

노사협력 우량기업과 중소기업청장 이상의 표창 및 수상업체도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지정업체 선정최소 1년이내 업체는 제외된다. 특히 여성대표자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추천기준별 배점외에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청서류

지정업체 선정원서 3부(병역법시행령 제73조 별지 제53호 서식)와 신청서 3부외에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3부와 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부를 첨부하면 된다.

그러나 에너지산업 및 광업분야의 경우 사업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3부, 공업분야 기간산업제 중 체굴업체인 경우 원본과 공업원부등본 3부를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 5년간 국가과학기술혁신 추진 –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법제업무 운용규정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1. 제정취지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산업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안보역량강화 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21세기를 대비하여 향후 5년간 국가과학기술혁신을 범국가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한시적인 특별지원시책을 범국가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지님.
- 나. 과학기술처장관은 특별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 및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계획에 따른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과학기술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 다. 정부는 국가총연구개발투자중 정부투자의 비중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 5개년계획의 투자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은 과학기술관련 정부예산안 편성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라. 정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과학기술개발 결과의 수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 마사회 및 경륜사업자에 대하여 기금출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마.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및 사업추진전담기관으로서 중점연구개발사업단을 지정·육성하고, 동사업의 수행결과 개발된 기술을 기업화하고, 동사업의 수행결과 개발된 기술을 기업화하는 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 인력지원 및 개발성과의 무상양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바. 정부는 창조적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투자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구에 필요한 대형공동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확보·이용을 위하여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사. 정부는 해외현지연구기관의 설립등에 대한 자금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자금·연구인력·기술정보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산·학협동 연구의 촉진을 위해 이공계대학 재학생의 산업체 실무교육 근거를 마련함.
- 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구비 지원 및 특정연구기관 보유기술등의 양여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력 평가에 기초한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함.
- 자.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비용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최저한세제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인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련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
- 차.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 추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문화기금을 설치하고 정부투자기관 및 개인·법인으로 하여금 기금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과학기술문화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카. 과학기술자의 복리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과학기술자공제조합의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 등 과학기술자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우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파. 법의 효력기간을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이 법에 의한 과학기술장관회의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와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처 정책기획과 (전화 : (02)503-7638, 9 FAX : (02) 500-3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